● 제32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170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3. 8. 14.

다. 회 부 일 : 2023. 8.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만15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립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시설임.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민간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적·안정적인 자립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2) 위탁유형: 시설위탁
-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커뮤니티시설동 210호, 212호, 213호(한강로2가, 용산 베르디움프렌즈)
- (4) 규 모: 478.98m²(사무실, 상담실, 창고 등)
- (5) 위탁사무 내용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진로·취학 등 지원
 - ㅇ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 ㅇ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 ㅇ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교육 및 지원
 - ㅇ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ㅇ 그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6) 위탁기간 : 5년(2024.1.1. ~ 2028.12.31.)
- (7)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8) 근거 및 필요성
 - ㅇ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자립지원전 담기관)
 - ㅇ 위탁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에 대상 자립수준평가 등 사후관리,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민간자원 발굴·연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인력에 의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 운영, 자립지원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아동·청년 에 대한 기본 이해를 기반으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이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 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시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자립지원전담기관)
-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및 자립지원 전담기관 지정위탁 운영 종료('23.12.)예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립지 원전담기관의 운영을 신규로 민간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제4조의3 제1항1)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그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 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1.12.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 그간 서울시 자립지원 관련 업무는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구체 적으로 2013년부터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 단위 사업별 사업수행 (민간위탁)을, 2022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확대 계획에 따라 시자립지원전담기관(지정위탁)을 운영하여 개인별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하여 왔음.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3년 1월에 아동자립지원사 업단을 설치하여 보호종료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추진 경위 >

○ **최초 위탁**(공개모집) : '13.1.1. ~ '15.12.31. *시의회 동의

- 수허가자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 **2차 위탁**(재계약) : '16.1.1. ~ '17.12.31.

- 수허가자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 **3차 위탁**(재위탁 공개모집) : '18.1.1. ~ '20.12.31.

- 수허가자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 **4차 위탁**(재계약) : '21.1.1. ~ '23.12.31. *시의회 동의

- 수허가자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 '21.7.13. 보건복지부「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해왔던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통합관리를 강화함.
- 이에 서울특별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자체적으로 기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20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안내' 등에 근거하 여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분리하여 '22.10월부터 現 사업(아동자립지 원사업단)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20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안내 >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조직 및 인력

○ (조직) 자립지원전담기관은 1개 조직으로 운영하되, 시도별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으로 분리 운영 가능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정

- (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진행 가능
- o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잔여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 o (지정방법) 적격심사로 진행
- 금번 동의안은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분리 운영 중인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자립지원전담기 관의 사업 및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 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자립지원전담기관' 통합운영(안)>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ㅇ 수탁기관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운영방식 : 사무형 민간위탁

○ 주요사무 : 자립지원정책 <u>단위사업별 수행</u> 및 사업기획 추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홍보 중심

ㅇ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702호

기존 (분리운영)

□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ㅇ 수탁기관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ㅇ 운영방식 : 자립지원전담기관 기운영 법인에 지정위탁

○ 주요사무 : 자립준비청년 **대상자 개인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중심

ㅇ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24길 124(아동복지센터 내) 0 운영인력 (단위: 명. '23.3월말 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계 사무국장 (비상근) 딘장 시무국장 과장 팀장 과장 간사 팀장 직워 (비상근) (겸직) (겸직) 23 (1) 2 2 2 (1) (1) 3 13 1

□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요(안)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ㅇ 운영방식 : 시설형 민간위탁

변경

○ 주요사무 :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후

자립지원 등 자립지원 관련 종합적인 업무 전담

(통합운영) ㅇ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 운영인력
 (단위: 명)

계	자립지원전담기관					
711	기관장	시무국장	팀장	직원		
32	1	1	4	26		

○ 또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실을 포함하여 꿈나 눔하우스 22개소(붙임1)의 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함에 따라 위탁유 형을 사무형 위탁에서 시설형 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함.

사무형 위탁	시설형 위탁				
행정재산(市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암자시설	행정재산(市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등의 관리위탁 없이 사무만 위탁	임차시설 등)의 관리위탁 수반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²)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아동복지법」제38조³) 및「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⁴)에서 보호대상아동⁵)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자립지원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자립준비청년⁶⁾ 등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비롯하여,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까지 수행하는 동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2)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u>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u>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u> <u>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u>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¹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자립지원전담기관) ① <u>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u>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quot;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 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6)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8〉

^{1. &}quot;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 또한「아동복지법」제40조7) 및「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8)에서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위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민간위탁조례」제4조9)제1항제3 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적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 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랍지원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7) 「}아동복지법」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u>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 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u> 〈개정 2019. 1. 15., 2021. 12. 21.〉

^{8)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자립지원전담기관) ③ 시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 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 다만 보호대상아동 및 자랍준비청년 대상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집행기관은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련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붙 임 **자립준비청년 꿈나눔하우스 현황**

('23.7월말 기준)

				(23./월말 기준)				
연번	꿈나눔하우스 위치	운영시설 (법인)	무상사용 계약기간	면적 (㎡)	방수	현원	유형	매입시기 (준공)
	22개소				64	40		
1	강남구 개포동 1173-15 2층 202호	강남드림빌 (시회복지법인 그린힐)	'23.1.1.~ '25.12.31.	58.92	3	2	여	2016 (2015)
2	서대문구 북아현동 1-318외 1필지 신영빌라트 제201호	구세군서울후생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23.1.1.~ '25.12.31.	45.15	3	0	남	2015 (2011)
3	관악구 봉천동 670-9 그랜드빌 제303호 ①	동명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23.1.1.~ '25.12.31.	50.14	3	3	남	2015 (2015)
4	관악구 봉천동 670-9 그랜드빌 제203호 ②		'23.1.1.~ '25.12.31.	50.14	3	2	남	2015 (2015)
5	강동구 길동 339-4 제501호 ①	명진들꽃시랑마을 (사회복지법인 성암복지재단)	'23.1.1.~ '25.12.31.	74.07	3	0	여	2015 (1996)
6	강동구 암시동 501-4 암시동양텍스빌 803호 ②		'23.1.1.~ '25.12.31.	84.68	3	3	남	2016 (1999)
7	은평구 신사동 34-6 새한(아) 404호 ①	서울특별시 꿈나무미을 초록꿈터 (재단법인 기쁨나눔)	'23.3.1.~ '25.12.31.	82.95	3	2	남	2016 (2004)
8	은평구 응암동 176 응암푸르지오(아) 제105동 제406호 ②		'23.1.1.~ '25.12.31.	59.58	3	3	남	2017 (2008)
9	은평구 응암동 176 응암푸르지오(아) 제107동 제503호 ①	서울특별시 꿈니무미을 파란꿈터 (재단법인 기쁨나눔)	'23.1.1.~ '25.12.31.	59.58	3	3	여	2015 (2008)
10	은평구 응암동 176 응암푸르지오(아) 제107동 제104호 ②		'23.1.1.~ '25.12.31.	59.58	3	1	여	2017 (2008)
11	구로구 오류동 346 오류동푸르지오 104동 404호	에델마을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	'23.1.1.~ '25.12.31.	61.25	3	3	여	2016 (2004)
12	은평구 구산동 14-21 에덴드림(아) 제402호 ①	은평천시원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23.1.1.~ '25.12.31.	84.84	3	2	남	2015 (2004)
13	은평구 구산동 224 경남아너스빌 106동 1102호 ②		'23.1.1.~ '25.12.31.	84.99	3	3	여	2016 (2004)
14	성동구 미장동 817 삼성아파트 102동 402호 ①	이든아이빌 (사회복지법인 화성영아원)	'23.1.1.~ '25.12.31.	84.93	3	0	여	2016 (1996)
15	성북구 하월곡동 224 샹그레빌(아) 104-1503호 ②		'23.1.1.~ '25.12.31.	79.98	3	2	남	2016 (2004)
16	강서구 방화동 814 방화5단지(아) 제506동 제105호 ②	지온보육원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집)	'23.1.1.~ '25.12.31.	49.77	2	1	여	2015 (1994)
17	강서구 방화동 814 방화5단지(아) 제505동 제403호 ①		'23.1.1.~ '25.12.31.	49.77	2	2	여	2016 (1994)
18	동작구 대방동 393-49 참좋은맨숀 1층101호	청운보육원 (사회복지법인 청운종합복지원)	'23.1.1.~ '25.12.31.	84.83	3	3	남	2016 (2004)
19	금천구 시흥동 1010 벽산(아) 110동 701호	혜명보육원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23.1.1.~ '25.12.31.	84.99	3	2	남	2016 (2000)
20	은평구 신사동 342-35외 1필지 제501호	서울특별시 꿈나무미을 파란꿈터 (재단법인 기쁨나눔)	'23.5.1.~ '25.12.31.	65.94	3	3	남	2015 (2009)
21	동대문구 장안동 410-13 센토빌아파트 제4층 제402호	보호연장아동 자립체험홈	우영 예저	68.78	3	-	남	2015 (2004)
22	서대문구 영천동 70-10 제201호			62.40	3	-	여	2015 (2002)